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11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3. 제안이유

가. 정보사회의 발달로 대부분의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단종 등으로 부속품 공급이 중단되어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여도 필요기관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나.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가격기준이 낮아 불필요한 감정으로 수수료 낭비 사례가 있어 소요조회 및 감정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 대상 물품가격 상향조정
(제16조 제3항)

- 동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 동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

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

나. 불용품 매각시 물품의 감정가액 기준 상향조정(제17조제4항)

- 불용품 감정대상 :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의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 미처분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 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재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불용품 결정시 소요조회 대상		2천만원 이상
동일시도 조회 (시군, 자치구 포함)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중앙부처, 타시도 조회	1천만원 이상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물품	1천만원 이상	

※ 붙 임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